

의안번호	제 9 호	의결사항
의결년월일	1997. 3. . (제 회)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사천시장
제출년월일	1997. 3. 7 .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
----------	---

제출일자 : 1997. 3. 7.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제안이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용 부동산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중 농촌지역과 시지역으로 분리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함.(안 제11조)
- 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물 부속토지도 감면대상으로 함.(안 제12조제1항)
- 다.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대상중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 최초 분양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공장의 종류)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초 부동산 취득 추진주체와 참가업체는 감면대상에 포함함.(안 제13조제1항)
- 라.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안 제19조의2)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 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이내의 토지에 한한다)”를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 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 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하고,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승인을 받은 자 및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를 “승인을 받은 자”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협동화 사업 실천 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구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 사업실천 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

의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2. 시장 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 시장에서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자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 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 를 포함한다)로서 당해지역에 거주 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하 다)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 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 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 하 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 지 역에서는 993제곱미터이내의 토지 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 1.~4.(생략)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①.....부속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 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 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 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및 그 가족 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 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 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 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 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및 그 가족 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 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신 설>	1.~4.(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			
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			
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u>사용검사일</u>			<u>사용승인일</u>
<u>까지</u> 교부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			<u>까지</u>
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			
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			
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			
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			
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			
대 이상의 <u>공동주택(아파트·연립</u>			<u>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u>
<u>주택·다세대주택</u> 을 말하며, 당해			<u>·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u>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			
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			
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현	행	개	정	(안)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13조(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제13조(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①(생략)	①(현행과 같음)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1. 승인을 받은 자			
2.(생략)	2.(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3.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 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재태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각면) 중소기업의구조 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 구 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 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 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 재개발·재건 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자	
		2. 시장 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	존 시장에서 시장 재개발·재건	축사업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 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 의 자로부터 시장 재개발·재건 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자